



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

[시행 2022. 3. 22.] [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-226호, 2021. 8. 3., 일부개정]

국가기술표준원(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), 043-870-5455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(이하 "안전기준"이라 한다)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전기준)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속서 1(등산용 로프)
2. 부속서 2(스포츠용 구명복)
3. 부속서 3(-)
4. 부속서 4(-)
5. 부속서 5(건전지(충전지는 제외한다))
6. 부속서 6(-)
7. 부속서 7(-)
8. 부속서 8(-)
9. 부속서 9(-)
10. 부속서 10(자동차용 브레이크액)
11. 부속서 11(-)
12. 부속서 12(-)
13. 부속서 13(자동차용 타이어)
14. 부속서 14(-)
15. 부속서 15(-)
16. 부속서 16(-)
17. 부속서 17(-)
18. 부속서 18(미끄럼방지타일)
19. 부속서 19(고령자용 보행보조차)
20. 부속서 20(고령자용 보행차)
21. 부속서 21(-)
22. 부속서 22(디지털도어록)
23. 부속서 23(-)

24. 부속서 24(롤러스포츠펠트보호장구)
25. 부속서 25(-)
26. 부속서 26(-)
27. 부속서 27(-)
28. 부속서 28(-)
29. 부속서 29(-)
30. 부속서 30(-)
31. 부속서 31(스노보드)
32. 부속서 32(스케이트보드)
33. 부속서 33(스키용구)
34. 부속서 34(-)
35. 부속서 35(-)
36. 부속서 36(-)
37. 부속서 37(-)
38. 부속서 38(-)
39. 부속서 39(-)
40. 부속서 40(이륜자전거)
41. 부속서 41(-)
42. 부속서 42(-)
43. 부속서 43(-)
44. 부속서 44(-)
45. 부속서 45(헬스기구)
46. 부속서 46(휴대용 레이저용품)
47. 부속서 47(-)
48. 부속서 48(-)
49. 부속서 49(-)
50. 부속서 50(-)
51. 부속서 51(-)
52. 부속서 52(승차용 안전모(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))
53. 부속서 53(운동용 안전모)
54. 부속서 54(-)
55. 부속서 55(-)
56. 부속서 56(-)
57. 부속서 57(-)

- 58. 부속서 58(-)
- 59. 삭제
- 60. 삭제
- 61. 삭제
- 62. 삭제
- 63. 삭제
- 64. 삭제
- 65. 삭제
- 66. 삭제
- 67. 부속서 67(실내용 바닥재)
- 68. 부속서 68(온열팩(주머니 난로를 포함한다))
- 69. 부속서 69(수유패드)
- 70. 부속서 70(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)
- 71. 부속서 71(기름난로(연료소비량 600g/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.))
- 72. 부속서 72(전동보드)
- 73. 부속서 73(야외 운동기구)
- 74. 부속서 74(가정용 미용기기)

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 제조업자명,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제3조(안전기준의 해석)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부칙 <제2021-226호,2021.8.3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